

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9호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「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사업」 수행을 위해 동법 제2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1월 27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」 수행기관 지정 고시

- 지정 기관명 : 「기술보증기금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가. 소재지 : (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
나. 대표자 : 김 중 호
- 지정 기간 : 2022년 1월 27일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
-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되는 업무
가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기술 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기획·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
나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운용 및 관리

부칙<제2022-9호, 2022. 1. 27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